# 재외동포







이 정보는 2018-04-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각자에게 국적, 출입국, 국내활동 등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외동포
1. 재외동포 개관
1.1. 재외동포 개요
1.1.1. 재외동포의 개념
2. 재외국민
2.1. 외국생활
2.1.1. 재외국민등록 5
2.1.2. 가족관계등록 7
2.1.3. 재외선거
2.1.4. 출입국
2.2. 국적
2.2.1. 국적선택
2.2.2. 국적상실
2.3. 국내생활
2.3.1. 재외국민 주민등록
2.3.2. 입학
2.3.3. 부동산 거래
2.3.4. 금융거래·재산반출
2.3.5. 건강보험·국민연금
2.3.6. 병역
3. 외국국적동포
3.1. 국적
3.1.1. 대한민국 국적취득
3.1.2. 국적판정
3.2. 출입국 및 체류
3.2.1. 출입국
3.2.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3.2.3. 국내거소신고
3.3. 국내활동
3.3.1. 취업
3.3.2. 유학
3.3.3. 부동산거래
3.3.4. 금융거래·재산반출
3.3.5. 건강보험·국민연금



## 1. 재외동포 개관

# 1.1. 재외동포 개요

# 1.1.1. 재외동포의 개념

# ☑ 재외동포의 개념

- 재외동포란?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이 콘텐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를 ① "재외국민"과 ②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관련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재외국민> 부분에서,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령정보는 <외국국적동포>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재외국민

# 2.1. 외국생활

## 2.1.1. 재외국민등록

#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제도
  -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 등록방법

구분	내용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① 주소나 거소( <b>居所</b> )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b>分館</b> )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록처	②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우편접수 가능) 또는 온라인< <u>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u> >으로 등록(「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및 제11조)		
	<u>재외국민등록신청서</u> 제출(「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등록사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Q.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직업이나 주소 등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A. 등록자는 등록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u>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u>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또한,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신고 외에도(주소나 거소의 변경으로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신고의 특칙으로 있는 이동신고 제도 이용)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에 <u>재외국민등록이동신고서</u>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



호서식).

#### Q.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등록공관에 <u>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u>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 및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 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u>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u>>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1.2. 가족관계등록

#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 외국에서 하는 신고
  -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 』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 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정 및 정리에 관한 특례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u>가족관계등록 창설하가신청서</u>를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u>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차설</u> 가족관계등록부정의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0호, 2015. 6. 10. 발령, 2015. 7. 1. 시행)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1.
    - 짜외국민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 <u>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u>청서

- 。신분표
- 。 등록부 등본
- 🧝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이를 정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u>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u>를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포함)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 <u>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u>

- 。등록부 등본
- 및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 출생·인지·입양·혼인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u>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u>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포함)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2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해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u>》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u>

- 。 등록부 등본
- 🎍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 』비용부담
  - 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가족관계등록제도 및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상황별 신고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u>가족관계등록</u>> 콘텐츠 또는 <<u>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1.3. 재외선거

# 🛛 재외선거제도

-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1. 대통령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1.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1. 대통령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재외선거인은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5서식).
  -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u>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u>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u>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u>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u>>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 ■ 국외부재자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u>>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u>국외부재자신고서</u>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및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 📭 투표방법 및 절차

#### . 투표방법

-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 ⑤"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1항 및 제159조).
- 』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2항).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

#### \_ 투표절차

-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1항 본문).
- ※ 다만,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1항 단서).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3항).

N.	ᄱᅁᇀᅭᄉᆒᄸᅁ	트 ㅛ 수 셔 / 수 아 서	거관리위원회-분야별정보.	_ 11 이 서 ㅐ _ 11 이 서 ㅐ 네 ㄴ \
/-\	M $H$ $T$ $H$ $H$ $M$ $M$ $M$	T # 1' // L O O 1''	/	- //





※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분야별정보-재외선거</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1.4. 출입국

# 🕠 재외국민의 출입국

#### ■ 출국절차

-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제1항).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호).

#### ■ 입국절차

-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 』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1호).



- Q.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온가족이 영주귀국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하려는 영주권자는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12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 Q. 일본회사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업무관계로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북한방문 신고서

√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

재외국민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2제1항제1호).

※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므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출입국절차와 같습니다.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u>비자, 여권, 국적</u>> 또는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2. 국적

## 2.2.1. 국적선택

#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_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국적선택제도"란 「국적법」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53~154면].
  - 및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 『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오기 전이라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방법
  -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 13조제1항).
  -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본문).
    -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국적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
  - 』「국적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3조제3항).

## ■ 국적선택 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①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u>국적선택 신고서</u>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이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제4항,「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제4항,「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 <u>국적선택 신고</u>서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국적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함)
- 》「국적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국적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함)

####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방법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 14조제1항 본문).
  - 및 다만,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
    -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시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봄. 이하 같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
  -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_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1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8호서식 및 「<u>국적업무처리지침</u>」(법무부 예규 제1180호, 2018. 2. 28. 발령, 2018. 3. 1. 시행) 제14조제3항].

# 🄉 <u>국적이탈 신고서</u>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및 병적증명서(신고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u>비자, 여권, 국적-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u>> 또는 <<u>하이코리아-정보마당-국적/귀화</u> 안내-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2.2. 국적상실

# ☑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 국적상실
  -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2항).
    -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및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 』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국적법」 제 15조제3항).
- 국적상실 신고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 제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이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제1항, 제22조, 「국적법 시행령」 제 20조제1항, 제29조제7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1. <u>국적상실 신고서</u>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고국적상실에 따른 권리변동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8조).
    - ※ 국적상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u>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상실</u>> 또는 <<u>하이코리아-정보마당-국적/귀화 안내-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3. 국내생활

# 2.3.1. 재외국민 주민등록

## 🕠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홍보물).
- ▮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 » <u>주민등록신고서 (재외국민용)</u>

-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제5항).

## Q.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A.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 2.3.2. 입학

## ■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등

-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제1호).
- 고등학교 입학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기학교 입학전형(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 및 후기학교 입학전형[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 》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사람
  -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중·고등학교특례입학</u> 업무처리요령」(교육부 고시 제2015-70호, 2015. 8.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및 대학 및 대학원 입학편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그 밖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제외)에 입학·편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제2호제7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라목).

## 2.3.3. 부동산 거래

## 📭 부동산 거래

- \_ 부동산거래 신고
  - 및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 재외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국가 등"이라 함)인 경우 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 위의 2.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 재외국민이 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3.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4.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 5. 실제 거래가격
  - 6.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에만 적용]
  - 7.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에만 적용1
  - 8.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9.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 ※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별지 제6호서식).

#### 🗽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 ☑ 등기신청절차

-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 。신청정보
    -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ᢎ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및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u>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u>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대법원 등기예규 제1640호, 2018. 3. 7. 발령·시행) 2.].



구분	추가제출서류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으로도 가능]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추가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등기를 하려 했더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하다네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 A.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 49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u>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u>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753호, 2017. 7. 31. 발령·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

-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3. 기본증명서

# 2.3.4. 금융거래·재산반출

# 🛛 금융거래

- 금융기관 이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 본문).
- 』외국환 거래



- 』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에 대하여는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 및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 ☑ 국내재산반출

- 및 국내재산 반출절차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국민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u>외국환거래규정」</u>(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0호, 2017.12.28 발령, 2018.1.1. 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위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2.3.5. 건강보험·국민연금

#### □ 건강보험

-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가입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 \_ 국민연금가입
  -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 Q.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 전단 및 제 77조제3항).
  - 1. 배우자
  - 2.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4.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 5.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관한 인정기준은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반환일시금은 위의 1.부터 5.까지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위의 2,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2항).
-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국민연금공단</u>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3.6. 병역

#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 연기

- 연기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 60조제1항·제2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 1.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고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 ■ 연기사유 종료 등

- 』 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합니다(「병역법」 제 60조제3항).
- 』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신청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 』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 128조의2제2항).

## 👊 입영일자 등의 연기

- 입영일자 등의 연기
  -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자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6호).
  -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자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 □ 외국영주권자 등에 대한 특칙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
    -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및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u>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등</u> 입영희망 신청 제도).
    -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병무청</u> <u>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u>병역의무자(입영 전)</u>> 콘텐츠 또는 <<u>병무청</u>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외국국적동포

# 3.1. 국적

## 3.1.1. 대한민국 국적취득

# ☑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 』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u>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u>」(법무부 예규 제 1103호, 2015. 12. 18. 발령, 2016. 1. 1. 시행) 제1조 참조].

####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사람
-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에 따라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1항).
- 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 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명자료
- 』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 조제2항).
-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증명자료
- 』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자가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그 밖에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척관계 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3항).

- \_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 및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
- 고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이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
  - 』 사무소장 등은 외국국적동포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3항).
  -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함)되어 있는 사람
  -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 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 』 사무소장 등은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합니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4항).
    - ※ 이 콘텐츠에서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에 관련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u>비자, 여권,</u> 국적-국적-국적취득> 또는 <하이코리아-정보마당-국적/귀화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1.2. 국적판정

##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판정

- . 국적판정의 개념
  - "국적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 \_ 국적판정의 신청
  - 국적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 <u>.</u> 국적 판정 신청서

》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 》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 🌡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심사 및 판정
  - 및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별도로 국적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국적판정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u>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판정</u>> 또는 <하이코리아-정보마당-출입국/체류-국적판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 출입국 및 체류

## 3.2.1. 출입국

# ☑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 』기본원칙
  - \_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입국
  - 및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11조 및 제 12조제1항·제3항).
    - 🄉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

-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 囊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 체류

-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 17조제1항).
  -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 31조제1항 본문).

#### 囊출국

- 』 외국인이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및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 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3).
-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7.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하이코리아-정보마당-출입국/체류 안내</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 🕠 재외동포체류자격

-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u>사증발급신청서</u>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서식 및 「<u>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u>」(법무부 고시 제 2011-534호, 2011, 10, 17, 발령, 2011, 11, 1, 시행)].



구분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3.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4.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활동범위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u>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5-29호, 2015. 1. 26. 발령, 2015. 2.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및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 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
    - , 체류지 입증 서류

#### 3.2.3. 국내거소신고

# 💶 국내거소신고

- \_ 국내거소신고란?
-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재외동포체류자격 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의무적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 \_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u>국내거소신고</u>서

- 🌡 사진(반명함판) 1장
- 。 여권 사본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고국내거소신고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Q. 중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생활 중인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Q.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①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②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③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경」 제13조제2항 전단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u>하이코리아-정보마당-출입국/체류-재외동포-거소신고의의/절차</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3. 국내활동

# 3.3.1. 취업

#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

- 』 외국인의 국내취업
  - 』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 아래에서는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취업을 위해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사증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 ※ 그 밖의 사증발급, 체류자격별 취업활동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하이코리아-정보마당-출입국/체류-초청/사증(VISA)</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u> <u>제한범위 고시</u>」(법무부고시 제2015-29호, 2015. 1. 26. 발령, 2015. 2. 1. 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_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 "방문취업제도"란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하이코리아-정보마당-출입국/체류-초청/사증-사증-체류자격별 사증발급매뉴얼-연번 37>.
-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 위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제2항).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 조제1항)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용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u>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u>>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3.2. 유학

#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유학

- ▮ 유학조건
  - 』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국내유학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D-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다만,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 유학 절차

#### \_ 입학 준비

- 』 대한민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학목적인지 연수목적인지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기간 및 이수학점, 학비 및 체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고려해서 가려는 학교를 선정합니다.
- 특히, 한국어 연수과정이나 단기과정이 아닌 정규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려는 대학의 입학필수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및 위의 과정이 끝나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입국

- 』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 ※ 체류자격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의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국내 생활

- 』 유학생활을 할 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해 주거문제를 비롯한 은행·대중교통·통신 및 우편·의료기관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및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유학종합안내시스템>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학업의 종료

- 유학이 끝난 후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등 상위교육기관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D-2 또는 D-4)을 취업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현재의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합니다.
  -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유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u>외국인유학생</u>>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3.3. 부동산거래



# 🕠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취득신고

- 』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u>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u>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 』 외국국적동포는 상속·경매,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합병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 및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및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1호).

# ■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및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 ■ 토지취득의 허가

』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와 ②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6호서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및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_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거래관련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 <<u>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의 방법과</u> 절차-토지취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등기신청절차

- ▂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 。신청정보
    -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및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u>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u>」(대법원 등기예규 제 1640호, 2018. 3. 7. 발령·시행) 2.].

구분	추가제출서류
	√ 처분위임장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한 번역문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경우	√ 토지취득허가증 등
	√ 주소증명

※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3.4. 금융거래·재산반출

## 🕠 금융거래 및 재산반출

-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 18조제1항 본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 본문).
- 고국내재산 반출절차
  -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u>외국환거래규정</u>」(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발령, 2018. 1.
  - 1. 시행) 제1-2조제29호나목 및 제4-7조제1항].
  -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위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3.3.5. 건강보험·국민연금

# ☑ 건강보험

- \_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제 126조제1항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 ※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 126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Q.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